

1.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평가기관(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변경하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 출제 및 편집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타 시도 응시인원에 대한 지자체 비용부담 근거를 신설함 (안 제11조의2)
- 나.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변경함 (안 제12조)
- 다.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시행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 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변경함 (안 제17조)
- 마. 필기시험 출제 및 편집 방법을 변경함(안 제18조)
- 바. 평가기관의 장이 최종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25조)
- 사. 평가기관의 장이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아. 소방청장이 평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4조 전단 중 "소방정책국"을 "119대응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을 "별표 1"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평가시험의 위임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평가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평가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
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3조의 제목 "(시험방법)"을 "(평가시험의 시행·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정을 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하반기 구분 실시
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1, 2와"를 "별표 2 및 별표 3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 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5조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별지 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로 한다.

별표 2(중전의 별표 1), 별표 3(중전의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구 분	공기호흡기조작 및 사다리조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평 가 기 관 장 비 기 준	로 프	일반구조로프	소방자동차	펌프차(4인승 이상)		
	공기호흡기 세트	45분사용 이상 (용적 6.2L 이상)	통신설비	무선통신기기 공중전력 5W 이하 (10명당 1개 이상)		
	사 다 리	압력계 및 점멸등 경보음	소방호스	40mm, 65mm (2명당 1개 이상)		
	마 네 킨	보조마스크연결 가능	송배풍기	일반 송배풍기 (20명당 1개 이상)		
		전장 시 7M 이상 복식사다리 (10명당 1개 이상)	동력절단기	엔진식 (10명당 1개 이상)		
		25kg, 50kg (10명당 각각 1개 이상)	중층화재	3층 이상의 화재진압 훈련장		
			자동차화재	승용차(중형이상) (30명당 1개 이상)		
			화학보호복	열화상카메라 (20명당 1개 이상)		
				레벨A (10명당 1개 이상)		
	개 인 지 참	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방화복		아라미드 90% 이상사용	개인로프	8mm 7m이하 구조용 로프	방열복	'KFI 인증 이상
헬멧		KFI 인증 이상				
안전화		KFI 인증 이상				
장갑		KFI 인증 이상				

○ 시설기준

구분	공기호흡기 조작 및 사다리 조법	규격
시설기준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3m이상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격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 확보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20m이상
	특수화재진압	규격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가상 유류탱크 시설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길이 20m이상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 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활동장비 기준 적용

[별표 2]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4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10개 평가항목	평가 종목별 6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1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③ 소방펌프차 조작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⑤ 동력절단기 조작 ⑥ 송풍기 조작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⑨ 요구조자 검색 및 구조 ⑩ 화재진압 4인조법

[별표 3]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4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7개 평가종목	평가 종목별 7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7개)
전문화재 진압기술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별표 4]

채점관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본인이 채점관임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2. 채점은 모범 답안에 의거 적색(싸인펜, 구리스펜)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선으로 표시한다.
4. 채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
 - 가. 컴퓨터 수정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
 - 나.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
 - 다.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
 - 라.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
 - 마. 답안지에 정답 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때
 - 바.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5. 채점이 완료되면 모범 답안과 채점 답안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6. 채점 후 누구에게도 득점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 설 립 목 적

⑥ 설 립 연 월 일

⑦ 인증업무의 범위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략)

1. 평가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 장비, 교수요원 확보 등)

평가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평가업무의 범위: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인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	발급일자	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기관·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유효기간	지정조건	

(앞 쪽)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사 진 3cm×4cm (3개월 내 촬영 사진)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 :) (휴대폰 :)			
최 종 학 력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화재대응과정	교육기관			
교육수료	수료기간			
	수 료 증	1. 발급번호() 2. 교부일자()		
시험면제사유	필기평가			
	실기평가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시행 기관장 귀하				
응시번호				

..... (절) (취) (선)

응시번호	화재대응능력(1급, 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사 진 3cm×4cm (3개월 내 촬영 사진)
성 명		생년월일	.	.
년 월 일 시험시행 기관장 직인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한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매를 지참하여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화재대응능력 2급

Fire-fighter II

등록번호 : 제 증양 0000-0000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시험명 :

합격일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청 장 (직인)

National Fire Agency

화재 대응능력 1급

Fire-fighter I

등록번호 : 제 중앙 0000-0000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시험명 :

합격일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
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청 장 (직인)

National Fire Agency

화재대응능력 인증서 발급대장

인증번호	인증등급	발급일자	수료자 인적사항				인증시험 합격일	비고
			성명	(한자)	생년월일	소속기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규정</u> 은 화재진압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 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 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훈령</u> 은 ----- ----- ----- -----.
제2조(적용대상) 이 <u>규정</u> 은 소방 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신입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 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 <u>훈령</u> ----- -----. -----.
제3조(정의) 이 <u>규정</u> 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삭 제 <u><신 설></u>	제3조(정의) -- <u>훈령</u> ----- ----- ---. 1. ~ 3. (현행과 같음) 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 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 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 을 말한다.
제4조(설치) 화재대응능력 평가시 험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 <u>방정책국</u> 에 화재대응능력 평가	제4조(설치) ----- ----- ----- 11 <u>9대응국</u>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② (생략)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 ①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3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위원회는 장비·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

-----.

-----.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과반수 이상-----
-----.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 운영) ① -----

----- 별표 1-----
----- 별지 제1호서식-----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서식-----

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11조(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9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
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5. (생략)

② (생략)

<신설>

----- 별지 제3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
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평가시험의 위임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
다.

1. 평가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신 설>

나. (생 략)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
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
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
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
진화사 1급 또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
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

4. 평가시험의 출제·채점 및
평가

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응시자격) -----

-----.

1. -----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
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 (현행과 같음)

2. 화재대응능력 1급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
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
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
한 사람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
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

	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 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 람
제13조(시험방법) 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도 소방본 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u>일정 을 정할 수 있다.</u>	제13조(평가시험의 시행·공고) ① ----- ----- <u>다음</u> <u>각 호와 같이 시행</u> ----- -----.
<u><신 설></u>	1. <u>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u> <u>이상 상·하반기 구분 실시</u>
<u><신 설></u>	2. <u>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u> <u>이상</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 평가시 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1호서식</u> 에 따른 화재대 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 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 ----- ----- <u>별지 제4호서식</u>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험의 종류) 등급별 시험 의 기준은 <u>별표 1, 2와 같다.</u>	제16조(시험의 종류) ----- ----- <u>별표 2 및 별표 3과</u> -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합격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은 70점 이상, 1급은 8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출제 및 편집하되, 중앙소방학교장이 관리하는 문제은행에서 각 평가기관의장이 출제 및 편집한다.

②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③ 그 밖에 문제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

④ (생 략)

⑤ 중앙소방학교장은 문제의 예
시 및 문제은행의 구축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생 략)

②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며 각 평
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2조(응시대상) ① (생 략)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
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
지로 한다.

제23조(평가종목 및 출제) ① 평
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1의 화재대응능력 2급
은 10개 종목을 평가한다.

2.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1급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평가기관의 장-----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응시대상)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
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
지로 한다.

제23조(평가종목 및 출제) ① ---

-----.

1. 별표 2-----
-----.

2. 별표 3-----

은 7개 종목을 평가한다.

② (생략)

제25조(합격자 결정)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
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
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중앙소방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자 발표) ① 중앙소방
학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
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 (생략)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중
앙소방학교장은 필기시험과 실
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5호서식
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
하고 별지 6호서식의 발급대장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9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
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
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합격자 결정) -----

----- 소방청장-
-----.

제26조(합격자 발표) ① 평가기관
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소
방청장-----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유효기한) -----

-- 2027년 12월 31일-----
-----.